

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[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]

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4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

□ 참여기업 모집규모 : 000여개사

□ 사업기간 : 2023. 2. 1 ~ 2023. 6. 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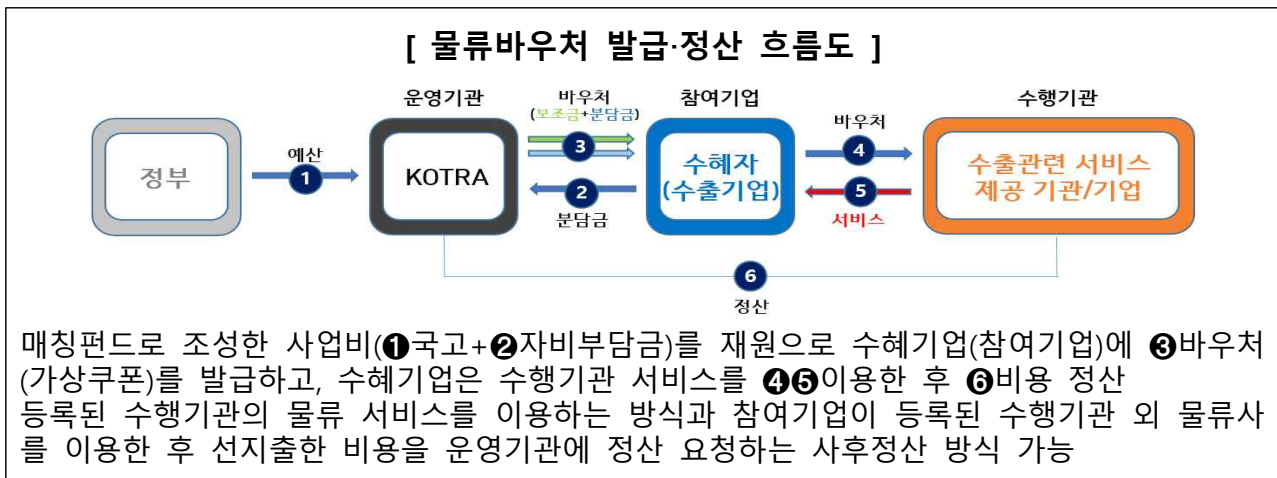
* '23.1.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(선하증권(B/L),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)
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□ 사업내용

- 선정된 중소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*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

* 바우처는 지원금(국가보조금) + 기업분담금으로 구성



2. 지원요건 및 내용

□ 지원요건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◆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◆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 - *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(참여제한) 상 열거 사유
- ◆ 산업부, 중기부,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(이하 참여기업) (2023.1.31. 일 기준)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- ◆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,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(이하 '수행기관'), '23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 - * 즉, 참여기업,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,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(참여제한) 규정에 의거,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
 - *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(제20호)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.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 4633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22中	주류, 담배 소매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※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,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.

□ 지원 내용

○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

항목	비목	상세 내용
국제운송비	운임	(한국→해외) 해상·항공 운송료, 국제복합운송*, 국제특송**
	보험료	운송에 따른 보험료

*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(예. 한국→(해운)→중국→(철도)→몽골)

**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, 청구비용의 70%를 운임으로 인정

[정산 가능/불가 항목]

구분	세부내용
필수 충족요건	-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(수출신고필증 기준) 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(CFR·CIF·CPT·CIP), D조건 (DAP·DPU·DDP)에 한해 지원가능
정산 가능항목	① 항공·해상 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 운송료 ④ 국제특송 이용료 ⑤ 추가할증료: 유류할증료, 저유황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 * 최종 정산가능 금액 = (①~⑤의 합계) x 70%(중소), 50%(중견)
정산 불가항목 예시	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E 및 F조건(EXW·FCA·FAS·FOB) 수출거래 -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(위험물 취급수수료 등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, 수입세,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, 수수료 일체 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- 각종 문서 송달비용 -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(해외→해외) 운송비용 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- 무상거래 샘플운송 -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
--	---

□ 지원대상별 바우처 발급액

구 분	(1) 중소기업	(2) 중견기업
바우처 발급액	1,000만원, 2,000만원 중 택 1	
국고보조율/금액	70% / 700만원, 1,400만원	50% / 500만원, 1,000만원
자비분담율/금액	30% / 300만원, 600만원	50% / 500만원, 1,000만원

□ 바우처 이용방식

- ① (등록 수행기관 활용)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등록된 수행기관(물류사)의 서비스를 이용하고, 서비스 종료 이후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
- ② (참여기업 사후정산) 참여기업이 등록된 수행기관 외의 물류사를 이용해 비용을 선지출하고, 운송이 완료된 후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

3. 참여기업 신청 방법

□ 신청 방법 :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* 온라인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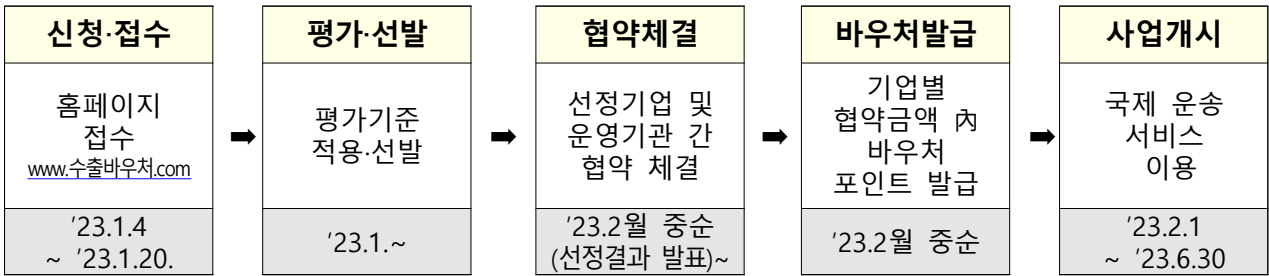
* 홈페이지 URL : www.exportvoucher.com/shipping

[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]

-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-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- 인증서 발급 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

□ 신청 기간 : '23. 1. 4(수) ~ '23. 1. 20(금) 24시 까지

□ 진행 절차



*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 시 구비서류 (* 구비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)

구분	연번	제출서류	발급방법
필수	1	물류비 집행 계획서	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
	2	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	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, 전자서명 첨부(별도 제출 불요)
	3	사업자 등록증명	국세청
	4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(기업 및 대표자/실질경영주)	국세청 정부24
	5	중소기업확인서 / 중견기업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,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 확인서 발급
	6	회사소개서 및 제품/기술 카탈로그(혹은 브로슈어)	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
선택	7	기타: 우대조건(가점)별 관련 증빙	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, 제출 *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,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

□ 평가 기준

평가범주	평가지표
계량	수출가능성 (수출 실적, 수출 증가율, 수출국가 다변화 등)
비계량	물류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

*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.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

* 수출실적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집계 예정

□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

◆ '23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
* 산업부(통합형), 중기부(통합형),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

◆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및 운영기관 공지 기한 내 자비분담금 미납 시에

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**자동탈락 처리하고,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임**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**중도에 협약을 해지**한 경우 물류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7조(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)에 근거하여 **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간 물류 바우처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**하게 되시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**15% 초과**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음.

***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**

바우처 잔액	제재
30%초과	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: 참여제한
15%초과 ~ 30%이하	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: 선정시 5점 감점
15%이하	제재 없음

◆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(바우처 잔액처리)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.

*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(바우처 잔액처리) 기준을 따름

◆ 중앙부처, 공공기관, 지자체의 동일·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것을 물류바우처로 **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**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(최대 5배)을 부과하며, 향후 「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」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
◆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「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」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.

4. 문의처

구분	전화번호
사 업	온라인 문의 * 커뮤니티>문의하기> "해당사업" 선택 후 작성
	통합안내센터 02 - 6004 - 8400
시 스 템	시스템 이용 관련(원격지원 가능) 02 - 3460 - 3427

[별첨 1] 지원 우대사항

연번	구 분
1	고용창출 우수기업
2	비수도권 소재기업
3	산업융합 선도기업
4	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
5	혁신조달기업(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)
6	사업재편승인기업
7	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

*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 필수 제출, 단, 2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

* 항목별 가점 1점 적용,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